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9. 7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인회 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
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
요구한 경우에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1조
제1항 제4호)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
요구한 경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21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	제21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
① (생략)	① (원안과 같음)
1 ~ 3 (생략)	1 ~ 3 (원안과 같음)
<u>< 신 설 ></u>	<u>4.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 요구한 경우</u>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원안과 같음)